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4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8. 2. 4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「공무원여비규정」(대통령령)이 2008. 1. 1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구청장에게 여비 적용기준 변경 (안 제3조제1항)
- 준용규정 일부 변경 (안 제5조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공무원법 제46조, 「공무원여비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에 의거 생략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으로 상시출장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(이하 “월액여비”라 한다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.

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,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

제3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 구청장은 「공무원여비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.

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.

제4조(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)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지급하고,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.

②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관용차량 관리 규정」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.

③ 제1항에서 “근무지내 국내출장” 이란 부산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.

제5조(준용규정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,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“「국고금관리법」 제24조제5항의 정부구매카드(이하 “정부구매카드” 라 한다)” 와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·제16조 중 “정부구매카드” 는 “여비전용카드” 로 본다.
2. 영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 을 “구청장” 으로 본다.
3.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“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” 는 없는 것으로 본다.
4. 영 제24조제5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71조제2항” 은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제2항” 으로 본다.
5. 영 제18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6. 영 제29조제1항 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” , 같은 조 제2항 중 “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”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” 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

7.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33 제2호가목”을 “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3 제2호 나목”으로, “「계약직공무원규정」 별표 1”을 “「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」 별표”로,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